

# 간호학과 특성화 발전 운영세칙

제정 2026. 04. 13.

**제1조(목적)** 본 운영세칙은 경동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중장기 발전계획을 근거로 간호학과(이하 ‘학과’라 한다) 특성화 발전 전략을 체계적·지속적으로 수립·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 관리, 학습성과 제고 및 지속적 질 개선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; CQI, 이하 ‘CQI’)을 통한 성과 중심 운영체계 확립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본 운영세칙은 학과 특성화 발전과 관련된 교육과정, 비교과 프로그램, 산학협력, 연구 및 지역사회 연계, 대외교류 활동 등 특성화 관련 제반 사업의 기획·운영·평가·환류 전 과정에 적용한다.

**제3조(기본원칙)** ① 학과의 특성화 발전은 본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연차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.

② 특성화 발전 운영 전반에 지속적 질 개선(CQI) 및 PDCA 기반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적용한다.

③ 특성화 발전 전략체계는 전략목표, 전략과제, 세부 실행과제를 기본으로 반영한다.

④ 특성화 발전 사업은 ‘계획-실행-점검-환류’의 연속 과정으로 운영하며, 연차별 ‘학과 운영계획서’와 ‘학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’를 작성한다.

**제4조(특성화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명칭)** 학과 특성화발전 계획의 수립·추진, 운영 점검 및 환류를 위하여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6조에 따라 간호대학 특성화발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를 설치·운영한다.

**제5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장은 기획담당 학과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전임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학장이 위촉한다.

③ 외부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, 산업체 위원 1인 및 졸업생 대표 1인을 포함하며 필요시 지역사회·유관기관 자문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의 임면 또는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⑥ 간사 1인을 두며, 회의 준비 및 운영 등을 담당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책무)** ① 위원은 특성화 발전 사업의 기획·운영·평가·환류에 적극 참여하고, 담당 분야의 자료 제출 및 성과관리·개선활동(CQI)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은 성과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고, 필요한 경우 성과지표 산출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·부서·구성원과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능)** 위원회는 학과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.

1. 학과 교육목적,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점검 및 개선
2. 학과 특성화발전 중장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
3. 학과 특성화 전략목표·전략과제·세부 실행과제(세부 프로그램) 운영 및 성과관리
4. 학과 특성화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개선
5. 학과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특성화 사업 추진
6. 학과 특성화 성과 분석 및 지속적 질 개선/PDCA 환류(개선계획 수립)
7. 학과 운영계획서 및 학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작성·관리
8. 성과지표 산출기준·증빙자료 목록·자료관리 체계 수립 및 관리
9.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계획 및 성과 연계 활용 방안

**제8조(위원회 회의)** 위원회 회의는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8조에 따른다.

**제9조(위원회 회의록)** 위원회 회의록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19조에 따른다.

**제10조(특성화 발전 전략체계)** ① 위원회는 발전계획서의 전략체계를 기준으로 사업을 기획·관리한다.

- ② 위원회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발전 전략체계(전략목표-전략과제-세부 실행과제)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학과 정책, 대외환경 변화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수정·보완한다.
- ③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, 대학 정책 및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수립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1조(학과 특성화 운영)** ① 학과 특성화 발전 사업은 교육과정, 비교과 활동, 연구 및 산학협력을 연계하여 운영한다.

- ②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은 학습성과와 연계하여 설계·운영한다.
- ③ 학과 특성화 성과는 정량·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.
- ④ 각 세부 실행과제는 책임교원(또는 담당부서)을 지정하고,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

**제12조(예산 편성)** 위원회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, 특성화 전략, 교육성과 지표, 인증 기준 및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.

**제13조(예산 집행 점검 및 환류)** ① 위원회는 예산 집행현황과 집행률, 집행계획 대비 차이를 점검한다.

②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, 조정(안)을 마련하여 개선한다.

③ 예산 집행 결과 및 개선조치는 학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고,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연계 반영한다.

**제14조(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는 발전기금 조성·확대·운영사업을 추진한다.

② 발전기금은 연차별로 관리하며, 모금·집행·관리 실적을 심의한다.

③ 발전기금 운영은 목적사업, 집행기준, 결과보고 및 환류 체계를 포함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.

**제15조(PDCA 기반 성과관리 체계)** ① 위원회는 매년 PDCA(Plan-Do-Check-Act)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한다.

② PDCA 단계별 주요 내용, 실행 주체, 환류 방법은 발전계획서의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따른다.

③ 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는 연차 학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및 개선계획(CQI)에 반영하고, 달성 기준, 평가 방법 및 활용 방안을 정한다.

**제16조(성과지표 및 성과목표)** ① 성과지표는 정량·정성 지표를 병행한다.

② 성과지표·목표(연차 목표 포함)는 연초(Plan) 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다.

③ 성과 목표는 전년도 실적(기준선)과 중장기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며, 달성 기준과 평가 방법을 정한다.

**제17조(성과평가 및 지속적 질 개선)** ① 특성화 발전 성과는 [별표] 학과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리 시스템에 근거하여 교육성과, 학생만족도, 취·창업 성과,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② 운영 결과는 매년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.

③ 평가 결과는 간호교육 인증평가 및 학과의 성과관리 자료로 활용한다.

**제18조(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)** ① 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과제를 도출한다.

②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은 차기 정기회의에서 점검하며, 미이행 또는 지연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.

③ 개선활동(CQI) 결과는 관련 위원회·부서와 공유하고, 교육과정·비교과·산학협력·학생지원 등 운영 전반의 개선으로 확산한다.

**제19조(보고서 및 자료관리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연 1회 이상 작성·관리한다.

1. 학과 운영계획서
2. 학과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
3. 학과 내규집

② 위원회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라 ‘학과 발전계획서’를 작성·관리한다.

**제20조(준용)**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6조에 따른다.

**제21조(운영세칙 개정)** 본 운영세칙의 개정은 「간호대학 간호학과 운영 내규」 제57조 제2항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본 운영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,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] 학과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리 시스템 (제17조 제1항 관련)

